

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[별표 3의3] <개정 2026. 6. 5.>

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

과명	분장사무
총무과	1. 서무, 인사, 관인과 도서의 관수, 문서, 연금, 기획, 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. 청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.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사무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.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특허과	1. 특허 등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, 심판의 참여,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2. 기록 및 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